

CONFIDENTIAL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ESG DISCLOSURE ROADMAP / 2026 최종안

ESG 공시, 이제 '법정공시'입니다

-2028년 시행, 지금 준비해야 할 것

I. 지속가능성 공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7월 8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초안과 비교하면, 이번 최종안은 ① 공시 대상, ② 공시 채널, ③ 인증 제도 세 축에서 뚜렷하게 강화되었습니다.

- ①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연결자산 30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적용받는 코스피 상장사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8년 10조원 이상을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2030년에는 2조원까지 확대가 검토됩니다. 다만 공시 첫해에는 자산·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에 한해 공시가 면제되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합니다.
- ② 공시 채널 역시 거래소 공시를 거치는 단계 없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28년부터 곧바로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즉시 시행됩니다. 재무제표와 보고 채널·시점을 일치시켜 3월말 공시로 통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수치를 동일 시점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적극적 면책(safe harbor)도 도입합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예측·추정정보뿐 아니라 당해연도 배출량 등 역사적 사실정보까지 포함한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은 이 기간에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 제도적 면책도 도입하여 손해배상·행정제재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형사책임은 배제됩니다.
- ③ 마지막 축인 인증 제도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제3자 인증은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도입되며, 초기에는 Scope 1·2나 거버넌스 등 한정된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인 Scope 3는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아예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결국 이번 최종안은 더 많은 기업이, 더 이른 시점에, 더 무거운 법적 지위의 공시를 준비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 지속가능성 공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공시대상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부터 시행 후 점진적 확대

2028년 (FY27)	2029년 (FY28)	2030년 (FY29) (검토 예정)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연결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연결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첫해 유예기준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 모두(and) 연결기준 10% 미만의 국내외 종속기업은 공시 면제

공시 채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법정공시 즉시 적용, 거래소 단계 없이 '28년부터 시행

면책

공시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적극적 면책 설계

- 시행 초기 제도 안착 및 기업의 적극적 공시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한 한시적 면책(3년) (※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면책기간 없음)

공시 정보 특성을 고려한 예측·추정 정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도입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책임은 Safe harbor 따라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형사책임은 배제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하게 3월말 공시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로 동일하게 공시 이행

Scope 3 : '31년부터 공시 이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업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 제외

제3자 인증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 의무(공시 개시 후 2년 간 유예)

세부적인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II. KSSB 기준, 기업이 실제로 공시해야할 것

이번 최종안은 지속가능공시의 '대상', '형식', '시점'뿐 아니라 '면책, 인증, 유예'까지 포함한 제도 운영방식의 전반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대상 기업이 그 틀 안에서 채워야 할 내용, 즉 어떤 요소로 공시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¹⁾)의 기준서입니다. 해당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IFRS²⁾)을 관장하는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³⁾)가 제정한 국제기준, 즉 IFRS S1·S2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26년 2월 26일 최종안이 공표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는 제1호 일반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됩니다. 제1호(일반 요구사항)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원칙을 규정합니다.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기업이 노출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이를 일관된 틀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의무 공시 주제는 기후로 한정되며, 기후 외 환경·사회·지배구조 사안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제2호(기후 관련 공시)는 제1호의 프레임워크를 기후 사안에 맞게 구체화한 기준입니다. 기업이 노출된 물리적 위험(홍수·가뭄 등 기후재해)과 전환위험(탄소규제·시장변화 등)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계획과 시나리오 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직접배출)·Scope 2(간접배출)·Scope 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로 구분해 공시해야 하며, 이 중 Scope 3는 산정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제1호가 총론을, 제2호가 기후라는 각론을 다루지만, 두 기준서를 관통하는 공시의 뼈대는 하나입니다. 바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라는 4대 핵심요소로, 제1호의 일반 원칙이든 제2호의 기후 세부 요건이든 결국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서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KSSB는 ISSB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요건을 일부 완화했는데, 톤당 내부탄소가격·산업별 지표·SASB 참고 여부 등에서 ISSB의 필수 요건을 KSSB는 선택·참고사항으로 낮춰 적용했습니다.

- 1)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회계기준원 내 설립된 기구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담당
- 2)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은 IFRS 재단이 제정하는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전 세계 14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표준
- 3)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재단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기준(IFRS S1·S2)의 제정을 담당

II. KSSB 기준, 기업이 실제로 공시해야할 것

제1호 (일반요구사항) 주요 내용

핵심요소	제1호 (일반요구사항)
목적	이해관계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정보 공시의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
적용범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¹⁾ 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 적용
공시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 공시
중요 정보 공시 의무	기업 전망에 영향을 줄 중요한 위험·기회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공시
핵심요소	-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모니터링·관리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통제·절차 - 전략: 지속가능성 위험·기회 관리를 위한 접근법 -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위험·기회의 식별·평가·우선순위·모니터링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위험·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요구사항 특징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하며, 보고시기 및 보고 기간은 재무제표와 동일 - 당기 모든 값에 전기 비교정보 공시 (서술형도 유용하면 비교 공시)
불확실한 정보 공시 구분	- 판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등 가정 사항 공시 - 측정 불확실성: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의 원천·가정·판단 공시 - 오류: 중요한 전기 오류는 비교값 재작성 및 성격 공시
경과규정	- 기후 외 사안 공시 선택: 기후 관련 위험·기회만 공시할지, 기후 외 사안까지 공시할지 선택 (기후만 선택 시 기준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 - 비교정보 면제: 기후 관련·기후 외 정보를 최초 공시할 때는 비교정보 생략 가능
자발적 적용 기업 규정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자발적 적용 기업이 법규에 따라 적용 의무화되면, 그 시점에 경과규정 적용 가능

1)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의 형태

II. KSSB 기준, 기업이 실제로 공시해야할 것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주요 내용

핵심요소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목적	이해관계자의 자원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
적용범위	기후 관련 위험 ¹⁾ 및 기회 ²⁾
핵심요소1 (거버넌스)	1. 의사결정기구: 감독 기구·개인의 책임 반영 방식, 보고 빈도, 목표 설정·감독, 성과지표의 보상 연계 등 공시 2. 경영진 역할: 기후 위험·기회 관리 관련 거버넌스상 경영진의 역할 공시
핵심요소2 (전략)	1. 기후 관련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 공시(기간범위 포함) 2. 사업모형·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예상 영향 3. 위험·기회 대응 노력(제품 변경, 공급망 협력 등)과 자원배분·사업모형 변화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4. 단기·중기·장기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5. 기후 변화·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사업모형의 회복력³⁾
핵심요소3 (리스크 관리)	1. 위험 프로세스 : 기후 위험의 식별·평가·우선순위·모니터링 프로세스와 정책 (시나리오 분석·평가법·모니터링 방법 등) 2. 기회 프로세스 : 기후 기회의 식별·평가·우선순위·모니터링 프로세스 3. 전체 통합: 위 프로세스가 전사 위험관리에 통합·작용하는 범위와 방식
핵심요소4 (목표 및 지표)	1. 산업 전반 7대 지표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회, 자본 배치, 내부 탄소 가격, 경영진 보상) 공시 2. 산업 기반 지표(IFRS S2 이행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 공시는 선택 가능 3.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와 이를 검토하는 기업의 접근법에 대한 정보
경과규정	1. 비교정보 면제 : 최초 적용연도 비교정보 생략 가능 (경과규정 적용 시 후속 기간 표시용 계속 사용 허용) 2. 기준 측정방법 한시 허용 : 직전연도에 GHG 프로토콜 외 방법(예: ISO 14064-1) 사용 시, 최초 적용연도에 한해 기존 방법 허용 3. 스코프 3 유예 : 최초 적용 후 3년간 스코프 3 미공시 허용 (자산운용·은행·보험사는 금융배출량 추가정보도 3년 유예)
자발적 적용 기업 규정	1. 자발적 적용 기업이 법규에 따라 적용 의무화되면, 그 시점에 경과규정 적용 가능

- 1)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물리적 위험(예: 홍수·가뭄) 및 전환 위험(예: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구분
2)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로 신제품 개발, 신규 사업 창출 등이 해당
3)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기후 관련 기회에서 효익을 얻는 역량을 의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의 점검 Point

기존의 자율공시와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법정공시는 공시의 내용과 책임 면에서 기업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법정공시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과징금, 행정제재 등 훨씬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GRI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율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그러나 KSSB가 요구하는 공시는 이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기존 공시가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다면, KSSB 이후의 공시는 재무보고와 동일한 수준의 정합성·검증 가능성을 갖춰 "투자자에게 검증 가능한 재무적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 양식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산정 방식부터 조직 간 협업 구조, 내부통제, 문서화 관행까지 기업 운영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이행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영향 식별 및 정량화

기존 GRI 기반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서술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쳤고, 재무영향 공시는 선택적이었습니다. KSSB는 기후관련 위험·기회가 기업의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단·중·장기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에 기후위험이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추적하는 재무영향 산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회계·재무팀과 협업해 이러한 방법론을 수립하고, 매 보고기간 갱신·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연결기준 공시 체계 구축

기존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개별 법인 또는 주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SSB는 보고기업 범위를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결실체 기준으로 요구합니다. 지배기업뿐 아니라 모든 종속회사의 데이터를 산정·취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종속회사별로 상이한 데이터 관리 수준을 표준화된 템플릿과 제출 기준으로 통일해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의 점검 Point

3. 시나리오 분석 및 회복탄력성 평가

기존 보고서는 정성적 리스크 서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SSB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이 다양한 기후 경로에서도 유효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결론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시나리오별 가정·방법론·불확실성 범위를 문서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현재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외부에 설명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4. 중요성 판단의 재구조화

기존에는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회사 재량으로 중요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KSSB는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재무적 위험·기회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이 판단을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해야 합니다. 매년 동일한 이슈를 반복 게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공시 프로세스 안에 정례화해야 합니다.

5. 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존에는 산정 방법론이나 가정, 과거 수치 재작성 사유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SSB는 판단·추정·측정불확실성·오류의 수정 및 재작성 등 작성 과정 전반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 근거와 판단 과정을 상시 문서화하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 데이터 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

제3자 인증이 2030년부터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은 인증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내부통제(입력→검토→승인 프로세스, 이상수치 검토 로직, 증빙 보관기준)를 지금부터 갖춰야 합니다. 기존의 수작업·엑셀 중심 데이터 관리에서 벗어나, ESG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전환에 따른 기업의 점검 Point

7. 거버넌스 공시의 구체화

기존에는 "ESG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개괄적 서술로 충분했습니다. KSSB는 이사회·경영진이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어떤 통제·정책·절차·보상 체계로 관리·감독하는지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통제·정책·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 실태를 정리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III. ESG 법정공시 대응을 위한 기업 경영 Action Plan

1.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대응을 위한 기업 Top10 과제

공시 제도의 세부 요건은 실무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지만, 아래 10가지는 CEO와 이사회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실무가 움직일 수 없는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각 항목은 “예/아니오”가 아니라 “언제·누가·어느 수준으로”를 정하는 결정이며, 조직·재무·공급망·투자·성과체계 전반을 건드립니다.

#	과제	핵심 질문
01	공시에 대한 책임	공시 총괄 책임을 어느 조직·임원에게 둘지, 이사회 내 감독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한 역할 부여가 되어 있는가?
02	공시에 대한 주체	공시 주관을 재무(CFO) 라인에서 할 것인가? 지속가능경영(ESG) 조직에서 할 것인가? 혹은 재무·ESG 협업 구조를 통해서 할 것인가?
03	Scope 3 공시를 위한 준비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15개 카테고리 중 우리 기업은 어떤 카테고리를 공시할 것인가? 유예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의 정보를 공시할 것인가?
04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인증에 대응 가능한 입력→검토→승인 프로세스와 증빙 관리 등 ESG 데이터 내부통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공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05	연결기준 공시를 위한 데이터관리 체계	연결기준·정량 데이터를 어떻게 산정·취합할 것인가? 연결기준 관리를 위한 ERP·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06	협력사 ESG 데이터 관리	Scope 3·협력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급망 계약·조달 기준에 데이터 제출 요건이 반영되어 있는가? 협력사 데이터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가?
07	이사회 보고체계	이사회·경영진이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감독하는 보고 빈도·의사결정 범위를 실질적으로 규정했는가?
08	주요 목표에 대한 KPI 연계	주요 목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어느 임원에게 둘지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가? 기후·지속가능성 목표를 경영진·조직의 성과지표(KPI)와 보상 체계에 연계할지 결정했는가?
09	ESG를 위한 투자계획	탄소감축·전환 대응에 필요한 자본배분을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는가? 향후 투자 의사결정 시 ESG 관련 투자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10	공시에 대한 인증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인증 대응 체계와 문서화·증빙 관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가?

Source : 기업전략연구소 Analysis

III. ESG 법정공시 대응을 위한 기업 경영 Action Plan

2. 기업 내부 준비 로드맵 (의무공시 2년 전 착수 원칙)

최종안은 대상 기업을 연결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래 로드맵은 제도 시행 일정(외부 축)과, 기업이 각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할 준비 과제(내부 축)를 함께 배치한 것입니다. 핵심은 '의무공시 시점'이 아니라 그 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계	시점	핵심 준비 과제
진단	T-2	- 적용 시점·연결 범위 확정, 이사회 오너십 지정 - 현행 GRI 보고서와 KSSB 요건 간 갭 분석(gap analysis) - 재무영향 산출 방법론·중요성 기준 설계 착수
구축	T-1	- 연결 데이터 수집 체계·표준 템플릿 구축 - ESG 데이터 플랫폼 도입, 내부통제(입력→검토→승인) 정비 - 기후 시나리오 분석·회복력 평가 프레임워크 수립
시범	T-1	- 모의 공시(dry-run) 및 문서화·증빙 체계 점검 - 거버넌스 공시 실태 정리, 법률 검토 라인 가동 - safe harbor 적용 범위 확인 및 그린워싱 리스크 검토
공사·인증	T-0	-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 이행(3월말) - Scope 3 유예기간 내 산정 인프라 순차 구축 2030년 제3자 인증 대응 체계 완성

규모별 실무 시사점

10조원 ↑: 28년 시행이 임박해 이미 3단계(시범)에 있어야 하며, 아직 진단단계면 압축 이행이 필요합니다.

5조원 ↑: 27년이 준비 착수 시점(T-2)입니다. 지금 1단계(진단)를 시작해야 여유 있는 이행이 가능합니다.

2조원 ↑: 대상·시점이 검토 단계이나, 선행 기업의 이행 사례를 관찰하며 사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I. ESG 법정공시 대응을 위한 기업 경영 Action Plan

3. 공시 대응을 위한 Governance · Data · Internal Control 체계구축

KSSB 공시 대응의 실체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무엇을 누가 책임지는가(Governance),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산정하는가(Data),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통제하는가(Internal Control). 이 세 축은 2030년 의무화되는 제3자 인증을 견디는 골격이기도 합니다.

1

Governance—감독과 책임의 구조화

- 이사회·경영진이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관리·감독하는 통제·정책·절차·보상 체계를 구체적으로 공시(위원회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작동 방식까지)
- 감독 의사결정기구·개인의 책임, 보고 빈도, 목표 설정·감독, 성과지표의 보상 연계를 문서화
- 공시 오너십(CFO·전략·법무)과 이사회 감독 주체 간 역할·보고선을 명확히 규정

2

Data Management—연결기준·정량화·산정 인프라

- 연결실체 기준으로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회사의 데이터를 산정·취합하는 체계, 표준 템플릿·기준 통일
- 기후 위험이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에 반영되는 경로를 추적하는 재무영향 산출 방법론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Scope 1·2는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 검증수치를 3월말 동일 시점 공시, Scope 3는 유예기간내 산정 인프라 단계적 구축.

3

Internal Control—검증가능성과 인증 대응

- 제3자 인증(2030년~)에 대응 가능한 입력→검토→승인 프로세스, 이상수치 검토 로직, 증빙 보관기준 정비
- 판단·추정·측정불확실성·오류 수정 및 재작성 등 작성 과정 전반을 감사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문서화
- 수작업·엑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ESG 데이터 플랫폼 등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act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T 02-2010-4956

E brcsi@barunlaw.com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 바로가기](#)